

비시민권자를 위한 여행 안내서(Travel Advisory)

면책조항: 본 여행 안내서는 법률구조협회의 이민법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여행 안내서는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추방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는 대개 해외여행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출국 후 문제없이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은 개별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적법한 미국 영주권자이며(그린카드 소지자), 그 어떤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출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적법한 영주권자라면 미국을 자유롭게 출국 및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시에는 그린카드(그린카드 미소지 시 여권 안에 있는 만료되지 않은 'I-551 스탬프')와 함께 여러분의 본국 여권이나 난민 이동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귀화에 필요한 계속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입국 시 여러분과 미국의 현재 연결고리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드시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 한다면 적법한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국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1년 이상(또는 6개월이상이라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적법한 시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이며 과거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출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 기소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입국 시 DHS가 추방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DHS는 추방 절차 진행 중 여러분을 '이주 구금(immigration detention)'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체포 이력은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처분 결과서(Certificate of Disposition) 등 범죄 혐의가 기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 또는 말소된 기록으로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DHS에서 입국이 불가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미국 밖에서 180일 이상 체류 시 특히나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유죄판결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 이력이 있다면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추방 재판 진행 중입니다. 여행해도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적법한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이고 현재 추방 재판 진행 중일 경우, (i) 만료되지 않은 유효 여권과 (ii) 만료되지 않은 그린카드, 또는 여권이나 I-94 카드에 있는 만료되지 않은 I-551 스탬프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재입국 시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으로 간주되어 입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귀국 후 의무 구금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하던 중에 그린카드가 만료되었고 출국한 지 오래되었다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어(경우에 따라) 재입국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규제에 따르면 추방재판 중이더라도 그린카드 소지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난민은 난민 여행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소지하더라도 추방재판 중 해외여행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출국 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출국 행위는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사전에 “사면”을 받았거나 출국 후 일정 기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면 출국 후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기타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추방명령을 받은 이유에 따라, 출국 후 일정 기간이 흘렀음에도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으로부터 출석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추방명령이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부재 하에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추방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방명령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이민심사행정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자동 핫라인 번호인 1-800-898-7180 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해도 안전하며 핫라인 이용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A-번호)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불법입국을 했거나 비자에서 허용하는 체류 기간을 넘겼습니다. 출국 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한 후 I-94 출입국 기록 증명서(흰색 또는 초록색 카드로, 미국 입국 시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첨부되었을 수 있으며 i94.cbp.dhs.gov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에서 허용하는 기간보다 오래 체류했거나, 또는 미국 입국 시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가짜 서류를 이용했다면 여러분은 “불법신분” 또는 서류미비자(undocumented)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본국 소재의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불법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180 일 이상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후 출국할 경우, 미국 비자 신청이 3년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할 경우 미국 비자 취득이 10년간 금지됩니다. 이를 **불법체류로 인한 3년 또는 10년간의 입국 금지**라고 합니다. 3년 또는 10년간의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후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향후 비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국 전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 입국을 허용하는 비이민비자가 아직 유효합니다. 이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적법한 신분(in status)이어야 합니다. 즉, I-94 출입국 기록 증명서(흰색 또는 초록색 카드로, 미국 입국 시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첨부되었을 수 있으며 i94.cbp.dhs.gov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에 기재된 기간 이후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불법 신분이라면 해당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I-94 출입국 기록 증명서에 기재된 체류 가능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겼다면 여러분의 비자는 취소됩니다. 미국 재입국 전 본국 소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일부 경우 본국이 아닌 국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3년 또는 10년의 금지 규칙은 불법 신분이었던 기간에 따라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고 현재 DHS에서 비자 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처리 중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신청 계류 중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DHS에서는 여러분의 신청이 철회 또는 포기된 것이라 간주합니다. 시급한 문제로 출국이 필요하다면 DHS에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통지서 아래에 기재된 번호로 DHS에 연락하면 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신분조정 신청(그린카드 신청/I-485)이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H-1B 또는 L-1 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분조정 신청 계류 중 출국은 일반적으로 신청 철회 및 포기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전 ‘해외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을 통해 DHS의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허가서란 특정 비시민권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입니다. 만약 승인 받은 해외여행 허가서가 있고 만료되지 않았다면, 미국 출국 행위는 신분조정 신청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을 경우 미국 재입국이 보장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DHS가 여러분의 미국 재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근거로부터 사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해외여행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DHS에서 재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 시 DHS에서는 망명 신청이 철회 또는 포기된 것으로 대개 판단합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허가서 신청을 통해 DHS의 출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미국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을 박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주장한 국가의 여권을 통해 여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국가로 여행할 경우 미국이민국(USCIS)에서는 여러분이 더이상 해당 국가로의 복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망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망명자이고 망명 지위를 인정받아 적법한 영주권자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DHS로부터 난민 여행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국가의 여권을 통해 여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국가로 여행할 경우 DHS에서 여러분의 망명 지위를 종료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망명 자격을 취득한 후 적법한 영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박해 국가로 여행하거나 박해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거나, 박해 국가의 보호망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경우 망명 신분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U 비이민자 신분(U 비자 소지)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U 비자 승인 후 미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여권에 있는 U 비자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a)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U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b) 90일 이내로 귀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분조정(그린카드 신청)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미국 출국 전 누적된 불법체류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출국 전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U 비이민자 신분을 신청했고 계류 중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은 상태로 U 비이민자 신분 신청 계류 중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U 비자가 실제 승인될 때까지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귀국 허가서를 받지 않는 한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출국 전 누적된 불법체류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3년 또는 10년간의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을 받아 재입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U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범죄에 대한 조사 또는 기소가 진행 중일 경우 출국 시 법집행 당국과의 협조에 영향이 갈 수 있으며, 법집행 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시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T 비이민자 신분(T 비자 소지)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T 비자 승인 후 미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여권에 있는 T 비자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a)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T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b) 90 일 이내로 귀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분조정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미국 출국 전 누적된 불법체류 일수가 180 일 이상일 경우, 3 년 또는 10 년간의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을 받아 재입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T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T 비자 신청 당시 본국으로의 귀환이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T 비이민자 신분을 신청했고 계류 중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T 비자 신청 계류 중 출국을 하게 되면 T 비자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예외 경우는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 제도나 북마리아나 제도로 여행을 갈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 제도나 북마리아나 제도(“미국령”)는 미국 영토이지만, 미국 본토에서 이곳으로 넘어가는 비시민권자는 국제 여행객과 동일하게 미국 이민 담당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INA § 212(d)(7) and 8 CFR § 235.5. **참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국 영토 내 공항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여행객이 본토에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사전조사” 과정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 없이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보통 진행됩니다. 이때 CBP 담당관이 체류자격(immigration status)에 대해 물을 수 있고, 여권을 심사하거나 여행객을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자세히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령에서 본토로 이동하는 비시민권자는 국제 여행객과 달리 여권 및 비자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그 외의 어떤 사유로든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NA § 212(d)(7) and 22 CFR 41.10 **참고**). 따라서 본토에서 질문하신 미국령으로의 여행은 유죄판결 이력이나 기타 사유로 추방 또는 입국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과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토에서 미국령으로 여행하기 전 출국 전 평이 좋고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